

##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(폐지)

제 정 : 2015. 10. 13  
폐 지 : 2020. 3. 1

**제1조(총칙)** 금강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금강대학교 내에 둔다.

**제2조(목적)** 금강대학교 창업보육센터의 설치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조직)** ① 창업보육센터는 창업교육, 창업 동아리지원, 사업화지원 업무 및 창업보육업무를 담당하며,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창업보육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창업보육센터에는 센터장과 담당직원을 둔다.

③ 센터장은 이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④ 학생들의 창업 상담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**제4조(사업)** 창업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창업강좌운영 관리 및 지원 사업
2. 창업동아리 운영 관리 및 지원 사업
3. 창업교육패키지사업 운영 관리 및 지원 사업
4. 창업지원관련사업 운영 관리 및 지원 사업
5. 창업관련 자유프로그램 운영 관리 및 지원 사업
6. 창업경진대회 운영 관리 및 지원 사업
7. 창업관련 산·학·관 협력 사업
8. 기타 창업보육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**제5조(계약직 직원)** ① 창업보육센터에는 센터의 사업비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직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계약직직원의 임면,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정한다.

**제6조(비밀유지의무)** 창업보육센터에 소속된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운영위원회)** ①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은 센터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
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③ 운영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창업보육센터 팀장이 된다.

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 한다.

1. 창업보육센터 사업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2. 창업보육센터의 세입·세출에 관한 사항
3. 창업보육센터의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4. 창업보육센터의 대외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
5. 기타 창업보육센터 목적 달성에 관한 사항

**제8조(사업비)** 창업보육센터의 사업비는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1. 정부부처, 충청남도, 중소기업청, 논산시청 창업 지원금
2. 금강대학교 대응자금
3. 기타 재원

**제9조(회계)** ① 센터장은 창업보육센터의 수입 및 지출을 총괄한다.

② 회계연도는 사업별로 정한다.

**제10조(사업비의 집행)** ① 창업지원단의 사업비는 사업별로 관리 지침 및 예산 회계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집행한다.

② 사업비는 창업보육센터의 사업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되, 국고지원금과 대응자금을 구분하여 각각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한다.

③ 사업비의 집행은 산학협력단이 작성하는 내부품의서, 지출원인행위서 등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하고, 관련된 증빙서류는 사업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④ 사업비 집행은 인건비 지급, 물품구매를 위한 계좌이체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학협력단 지정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.

⑤ 센터장 및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⑥ 창업보육센터는 센터장의 승인 하에 사업비를 집행하고 사용내역을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한다.

⑦ 창업보육센터는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, 금강대학교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**제11조(운영세칙)**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장에게 정한다.

**제12조(기타)**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관리 운영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자로 폐지한다.